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전문예술법인·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뿐 아니라 접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(안 제7조제6항)

II. 검토의견

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은 정)